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16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서영교·한정애·박희승

송재봉 • 임오경 • 유동수

박균택 • 서삼석 • 강유정

위성곤 • 이강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 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과 관련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 란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내란죄·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를 심대히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의 수 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특별사면 등의 제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하지 아 니한다.

- 1.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다만, 「형법」 제87조제3호 및 제90조의 죄는 제외한다.
- 2. 「형법」 제2편제2장의 죄. 다만, 「형법」 제101조 및 제103조의 죄는 제외한다.
- 3.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다만, 「군형법」 제5조제3호, 제8 조 및 제9조의 죄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2(특별사면 등의 제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다만, 「형법」 제87조제3호및 제90조의 죄는 제외한다. 2. 「형법」 제2편제2장의 죄. 다만, 「형법」 제101조 및제103조의 죄는 제외한다. 3.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다만,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다만,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다만,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다만,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다만, 「군형법」 제5조제 3호, 제8조 및 제9조의 죄는 제외한다.